

【문 1】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
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
니고,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된다.
- ㄴ. 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는 물론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
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
(前)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이 점유하여 그 취득시효가 완
성된 후 丙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乙이 丙의 취득시
효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
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乙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ㄹ. 甲과 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X토지 중 乙
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丙의 점유취득시효
가 완성된 후, 甲이 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丁에
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X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丙은 자신이 점유
한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해서는 소유 명의자
의 변동이 없으므로 그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 ㅁ. 甲 소유의 X토지를 점유하던 乙이 甲을 상대로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甲이 이에 응소하여 乙의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乙의 주장 사실을 부인한 결과 乙이 패소하고 그 판
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응소행위로 인해 乙의 점유취
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 ㅂ.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
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① ㄱ, ㄷ, ㅂ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ㅁ ④ ㄷ, ㅁ, ㅂ

【문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의 해제와 해제조건의 성취는 서로 법적 성격이 다르
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같다.
- ② 계약의 합의해제의 효과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원칙적으로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
용되지 않는다.
- ③ 계약의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 보호에 관한 민법 제
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된다.
- ④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무불이행은 주
된 채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문 3】 아래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甲은 2002. 2. 1.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
였다. 甲은 법정대리인 A의 동의없이 L신용카드회사와 신
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甲
은 乙이 운영하는 노트북 대리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외
장하드를 3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이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한편 甲은 당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월 60
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후 甲은 A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L사와의 위 신용
카드 이용계약과 乙과의 위 신용구매계약을 각각 취소하
였다.

<설명>

- ㄱ. 甲이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
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 ㄴ. 甲과 乙과의 신용구매계약은 A의 묵시적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 ㄷ. 만일 甲과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었음
에도 L사가 乙에게 甲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한
경우, L사는 여전히 甲에게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만일 甲과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었음
에도 L사가 乙에게 甲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한
경우, L사는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ㅁ. 위 ㄹ.의 경우, 甲이 반환하여야 할 이익은 乙로부터
구입한 재화, 즉 외장하드이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ㄷ, ㅁ

【문 4】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혼 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
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
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 ③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
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
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
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
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을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한 경
우에는 이를 발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문 5】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담보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지상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
- ③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 ④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기본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문 6】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 ②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서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한하여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소정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상실된다. 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로부터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④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보증채무 역시 소멸된다. 그러나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되어 보증인으로서의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문 7】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나,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③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다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달리,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문 8】 법인과 비법인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도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다.
- ②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란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대표자로 등기되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은 집합체로서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더라도 그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④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종 유사단체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족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종종 유사단체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문 9】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한 이후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③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④ 권리자가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지며 최고가 필요 없다.
- ④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혼성립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발생한다.

【문11】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다.
- ③ 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그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면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되었다고 하여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문12】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 ②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③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에는 채무자는 변제할 수 없다.
- ④ 채무의 성질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문13】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②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③ 점유자가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된다.
- ④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문14】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도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 ③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은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문15】친생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同棲)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탈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② 부와 자녀의 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경우와 같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 친생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나, 그렇다면 법원이 그 잘못을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친생추정의 효력은 사라진다.
- ④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문16】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 ②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한다.
- ③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만을 말하고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17】이자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 ②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이는 지급의 정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의미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 ③ 지료나 임료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다. 또한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연이자라고도 하는데, 그 법적 성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다.
- ④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문18】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재판상 청구하였다면 그로 인한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 ③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하면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 ④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문19】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나, 면책적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 ③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신채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된다.
- ④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와 함께 그 후 신채무자(채무인수인)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를 담보한다.

【문20】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권 상실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청구취지와 달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도록 정하는 것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
- ③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 ④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에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문21】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비교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訴) 제기의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 ㄴ. 대위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으나,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 ㄷ. 채권자대위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으나, 채권자취소권은 이와 같은 특정물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 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④ ㄴ, ㄹ

【문2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다.

【문23】 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 ②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③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 ④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고,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문24】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및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계약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 등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 ③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반면,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라면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④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대항력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임차목적물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이미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 결정에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지 전 소유자가 이를 상환할 의무는 없다.

【문25】 다음은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
- 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ㄷ.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
- ㄹ.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
- ㅁ. 취소권은 (㉤)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무효로 | - 취소할 | - 무효로 | - 무효로 | - 취소원인을 |
| | 한다 | 수 있다 | 한다 | 한다 | 안 날 |
| ② | 무효로 | - 취소할 | - 무효로 | - 취소할 | - 추진할 수 |
| | 한다 | 수 있다 | 한다 | 수 있다 | 있는 날 |
| ③ | 무효로 | - 취소할 | - 무효로 | - 취소할 | - 취소원인을 |
| | 한다 | 수 있다 | 한다 | 수 있다 | 안 날 |
| ④ | 취소할 | - 취소할 | - 취소할 | - 무효로 | - 추진할 수 |
| | 수 있다 | 수 있다 | 수 있다 | 한다 | 있는 날 |